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군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〉

■ 안규백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6034호)

2025. 2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오명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안규백의원 등 14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11. 29.
3. 회부연월일 : 2024. 12. 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병역법」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·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,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(안 제62조의3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기존 병에 한정된 재정지원 대상을 현역 군인 전체로 확대하여, 국가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(안 제62조의3 신설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62조의3(금융상품의 재정지원) ①</u> <u>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</u> <u>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</u> <u>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</u> <u>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</u> <u>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</u> <u>있다.</u> 1. 「<u>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</u> <u>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금융회사</u> 2. <u>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</u> <u>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</u> <u>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</u> <u>다.</u>

□ 현행 「병역법」에 의하면, 정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대체복무요원,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가입한 장병내일준비¹⁾적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²⁾.

[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]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적금 납입한도액	40만원	40만원	40만원	55만원
매칭비율	(원리금의) 33%	(원리금의) 71%	(원금의) 100%	(원금의) 100%
월 최대 지원금액	14.1만원	30만원	40만원	55만원

□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(장교, 부사관)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, 지원 대상을 현역 군인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.

특히, 초급간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무 여건을 고려할 때,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군 복무 의욕을 높이고, 나라를 위

1)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적금에 가입하여 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,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전역 후 일정 규모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임.

※ '18년 8월 병사를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 출시 후 '22년부터 정부지원금(매칭지원금)을 확대 시행 중
('22년) 월 14.1만 원 → ('23년) 월 30만 원 → ('24년) 월 40만 원 → ('25년) 월 55만 원
적금 가입 기간 : 복무구분별 의무 복무기간 내 최대 24개월까지

2) 「병역법」 제79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국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 및 제 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어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임.

[초급간부 급여 수준 현황]

구 분		장교(소위)	부사관(하사)	병사(병장기준)
월 급여	1호봉	· 기본급 2,017,300원 · 기타수당 879,720원 - 세전 : 2,897,020 - 세후 : 2,780,444	· 기본급 2,000,900원 · 기타수당 845,330원 - 세전 : 2,846,230 - 세후 : 2,731,441	· 봉급 150만원 · 자산형성지원금 55만원 - 비과세 : 2,050,000
	2호봉	· 기본급 2,107,100원 · 기타수당 890,197원 - 세전 : 2,997,297 - 세후 : 2,877,405	· 기본급 2,021,500원 · 기타수당 847,733원 - 세전 : 2,869,233 - 세후 : 2,754,463	

* 자료 : 국방부

- ☐ 다만,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☐ 본 개정안은 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6092호, 안규백의원 대표발의)과 동시에 발의된 안임³⁾⁴⁾.
- ☐ 양 개정안을 종합하면 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인 현역 병, 상근예비역, 대체복무요원, 사회복무요원에서 장교, 부사관(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), 공중보건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(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)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3) 당해 개정안은 재정지원 대상을 현 사회복무요원에서 공중보건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.

4) 양 개정안은 현역병, 상근예비역, 대체복무요원, 사회복무요원에서 장교, 부사관(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), 공중보건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(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)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다만, 양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초급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상에 편입하는 내용의 개정안(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의안번호 제2203441호)이 최근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⁵⁾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, 당시 의원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차이로 계류된 바 있음⁶⁾.

따라서 동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및 국회 차원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 구체적인 시행 방식 및 예산 조달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.

□ 한편, 본 개정안은 장교와 부사관 등 신규 금융지원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개정안 제2항의 대통령령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개정안 부칙에서 규정된 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임.

□ 국방부는 기존 법안 심사에서 적금 가입 범위, 기존 제도와의 종합 검토 필요성, 부처 간 이견 등을 이유로 계류되었던 점을 들어,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5)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('24.11.26.)

6) 기획재정부: 초급간부는 군인연금 개인기여금에 매칭해서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(7%)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점, 장병내일준비적금/단기복무장려수당/단기복무장려금 중 어떠한 제도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점, 가입 범위와 관련하여 기관 간 이견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한기호의원: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단기복무장려금 등 제도를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

박선원의원: 최근 있었던 수당 상승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

문 의 처
02)6788-5310